

第23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2月4日(木) 16時10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3面

(16時10分 開議)

○委員長 金成贊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在籍委員 11名 중 出席委員 9名으로 成
員이 되었으므로 地方自治法 第55條 規定에
의하여 第23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市民行政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금년 들어 처음 第23回 會議가 召集된
것 같습니다. '92年度에도 委員 여러분들이
미숙한 會議 進行을 했으나 協助를 해주신
덕분으로 그래도 큰 대과없이 이끌어 왔습
니다. '93年度에도 委員 여러분들께서 끊임
없는 協助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公
務員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
단히 감사합니다.

議案係長의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議案係 主任 禹東根 議案係 禹東根입니다.
報告드리겠습니다.

第23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는
地方自治法 第53條의 規定에 의거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召集하게 되었습니다.

報告드릴 事項은 1992年 12月 1일부터
12月 3일까지 3日間 서울特別市 鍾路區廳에
대한 '92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과 建議事項에 대한 處理 結果
가 1993年 1月 21日 종로구청장으로부터
通報되어 1993年 1月 28日 의장으로부터
市民行政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市民行政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은 1993年

1月 25日 서울특별시 鍾路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
例中改正條例案이 1993年 1月 26日 議長으
로부터 回附되었고, 1993年 2月 2日 서울
特別市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特別市鍾路區
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3年 2月 2
日 議長으로부터 回附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 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6時13分)

○委員長 金成贊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
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總務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周和鍾 總務局長 周和鍾입니다.

우리 區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진
력하고 계시는 市民行政委員會 金成贊 委員
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서울特別市 종로구 地方公務員 醫療職 公
務員에 대한 手當支給 基準이 他市道와 현
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이직률도 높고 優秀
人력을 確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서
울特別市自治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 中
改正條例 準則에 依據 提出된 서울特別市鍾路
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現在 우리 區 保健所에는 2名の 醫療職 公務員과 5名の 專門職 公務員이 있습니다. 醫療職 公務員으로는 保健所長과 醫藥課長이 있고 專門職으로는 內科 醫師, 齒科 醫師, 母子 保健科의 영유아실, 傳染病 豫防科 醫師, 巡廻診療 醫師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醫療職 公務員인 醫師의 手當으로 病院長級은 2급, 保健所長은 3級, 課長은 4號 나목으로 구분하여 支給하였고 專門職인 醫師의 手當은 勤續年數에 따라 가급은 43만원부터 45만원, 나급은 28만5,000원에서 3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 手當支給 基準이 낮음으로 인하여 保健所 醫師 採用이 어렵고 또한 우수한 人力을 確保하는 데에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現行 條例에는 他市道와 衡平이 맞지 아니하여 衡平을 維持하고 處遇를 改善해 주어 可及의 優秀한 人力을 採用하여 區民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 몇가지 數衍說明을 드리면 우선 醫療職과 專門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직은 保健所 醫師인 醫藥課長과 같이 一般 公務員들의 適用을 받으면서 階級이 부여된 의사를 말하며, 專門職은 契約에 의해 採用되는 의사입니다. 채용은 保健所長이 추천하여 市長을 경유 內務部長官에게 採用承認을 要請하고 承認에 의해 시장이 임용決定을 하여 保健所長에게 最終 下達하면 保健所의 要求에 의해서 區廳長이 契約, 任用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목 의사와 나목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목의사는 內科, 家庭 醫學科, 結核科, 産婦人科, 豫防 醫學科의 專門醫를 말하며 나목 의사는 이 전문의를 除外한 일반의를 말합니다.

또한 一般醫는 醫科大學를 졸업하고 醫師試驗에 合格한 사람을 말하며, 專門醫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해당 分野 試驗에 合格한 者를 말합니다.

이상 여러 委員님들의 理解에 도움이 될

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 條例(案)

제출년월일: 1993. 1. .

제 출 자: 종로구청장

1. 개정 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와 비교, 수당지급체계 및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고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지급함.

3. 개정안: 별첨

4.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 및 내무부 지기 01300-862(92.11.17)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안 변경 승인.

5. 신·구조문 대비표: 별 첨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판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①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직 공무원중 의사와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제2조(의료업무의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 구분표.
	②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

일반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4	급	월	609,000원		월	554,000원	
5	급	월	609,000원		월	518,000원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서,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2]

전문 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 급 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012,000원	월 673,000원
4 년 이 상	월 1,006,000원	월 667,000원
3 년 이 상	월 1,000,000원	월 661,000원
2 년 이 상	월 995,000원	월 656,000원
2 년 미 만	월 989,000원	월 6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료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	2호	3호	4호-나목	구분	전 문 의	일 반 의
의사	410,000	554,000	471,000	4급	월 609,000원	월 554,000
				5급	월 609,000원	월 518,000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중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호 봉	의사로서의 근무연한수	보 건 소		등 급 별 근무연수	가 급	나 급
		가 급	나 급			
1	3년미만	430,000	285,000	5년이상	월1,012,000	월 673,000원
2	3년이상, 6년미만	435,000	290,000	4년이상	월1,006,000	월 667,000원
3	6년이상, 9년미만	440,000	295,000	3년이상	월1,000,000	월 661,000원
4	9년이상,12년미만	445,000	300,000	2년이상	월 995,000	월 656,000원
5	12년 이상	450,000	305,000	2년미만	월 989,000	월 6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
조례준칙안

서울특별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 9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
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별표 1〉및〈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①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규정에 특수업무 수당중 의 료직 공무원 중 의사와 전임 전문직 의 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예산범 위 안에서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 이 지급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 9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 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 다
②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계약이 해지된 전문직 공무 원인 의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 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4 급	월 609,000원	월 554,000원
5 급	월 609,000원	월 5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 급 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1,012,000원	월 673,000원
4 년 이 상	월1,006,000원	월 667,000원
3 년 이 상	월1,000,000원	월 661,000원
2 년 이 상	월 995,000원	월 656,000원
2 년 미 만	월 989,000원	월 6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료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	2호	3호	4호-나목	구분	전 문 의	일 반 의
의사	410,000	554,000	471,000	4급	월 609,000원	월 554,000원
				5급	월 609,000원	월 5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중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호 봉	의사로서의 근무년한수	보 건 소		등 급 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가 급	나 급			
1	3년미만	430,000	285,000	5년이상	월1,012,000	월 673,000원
2	3년이상, 6년미만	435,000	290,000	4년이상	월1,006,000	월 667,000원
3	6년이상, 9년미만	440,000	295,000	3년이상	월1,000,000	월 661,000원
4	9년이상,12년미만	445,000	300,000	2년이상	월 995,000	월 656,000원
5	12년 이상	450,000	305,000	2년미만	월 989,000	월 650,000원
				비고 : 근무년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委員長 金成贊 周和鍾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司空 坤 專門委員 司空 坤입니다.

1993年 1月 25日 鍾路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 意見을 報告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직 공무원으로 종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소장)와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수당은 의사는 2호·3호·4호-나목으로 구분, 각각 41만원, 55만4,000원, 47만1,000원이며, 전임전문직 공무원중의사는 근속호봉에 따라 가급은 43만원에서 45만원, 나급은 28만5,000원에서 3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수당지급 체계 및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고 시민보건 행정을 위한 의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직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직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 중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에 관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4, 5급 전문의의 경우 월 60만 9,000원 이하, 일반의는 4급 55만4,000원, 5급 51만8,000원으로 하고 전임 전문직의 경우 3년 단위로 5호봉으로 구분하던 수당 체계를 2년에서 5년으로 근속년수를 구분함으로써 신진 우수인력의 확보 취지에 부합한다 하겠으며, 수당은 실질상 보수적 성격으로 서울특별시 각 구 체계가 통일을 기해야 하므로 준칙안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사공 곤

1. 의안 제출

○제출일자: 1993년 1월 25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 위원회 회부

○회부일자: 1993년 1월 26일

○회 부 자: 종로구의회 의장

3. 검토의견

○현행 의료직 공무원으로 종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소장)와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음.

음.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수당은 의사는 2호, 3호, 4호-나목으로 구분, 각각 41만원, 55만4,000원, 47만1,000원이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 중 의사는 근속 호봉에 따라 가급은 43만원에서 45만원, 나급은 28만5,000원에서 3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수당 지급 기준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수당 지급 체계 및 수당 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고 시민보건 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직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의료직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현 행〉

구분	2호	3호	4호-나목
의사	410,000원	554,000원	471,000원

〈개 정 안〉

구분	전 문 의	일 반 의
4급	월 609,000원	월 554,000원
5급	월 609,000원	월 518,000원

*전임 전문직 공무원 중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현 행〉

호 봉	의사로서의 근무년한수	보 건 소	
		가 급	나 급
1	3년미만	430,000원	285,000원
2	3년이상, 6년미만	435,000원	290,000원
3	6년이상, 9년미만	440,000원	295,000원
4	9년이상, 12년미만	445,000원	300,000원
5	12년 이상	450,000원	305,000원

〈개 정 안〉

등 급 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1,012,000원	월 673,000원
4년이상	월1,006,000원	월 667,000원
3년이상	월1,000,000원	월 661,000원
2년이상	월 995,000원	월 656,000원
2년미만	월 989,000원	월 650,000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4, 5급 전문직의 경우 월 60만9,000원 이하, 일

반의는 4급 55만4,000원, 5급 51만8,000원으로 하고 전임 전문직의 경우 3년

단위로 5호봉으로 구분하던 수당 체계를 2년-5년으로 근속년수를 구분함으로써 신진 우수 인력의 확보 취지에 부합하다 하겠으며, 수당은 실질상 보수적 성격으로 서울특별시 각 구 체계가 통일을 기해야 하므로 준칙안에 따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근거법규

○의료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委員長 金成贊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質疑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鄭命浩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命浩委員 鄭命浩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案件이 公務員 醫療業務手當이기 때문에 이 案件을 다루기 위해서는 專門醫와 一般醫로 區分해서 12年以上, 9年以上 細分化를 했는데 간추리면 自動적으로 수당 인상을 해서 지금 現在 醫師들의 士氣振作과 專門醫를 많이 고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것 같습니다. 이안을 다루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지금 現在 手當 말고 급여 水準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手當을 除外한 나머지 給與 및 총 支給額을요.

○保健行政課長 閔載植 保健行政課長입니다. 鄭委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으로서 제급제 공무원, 즉 지방의무서기관, 소장급으로 한 분이 있고, 지방의무사무관인 醫藥課長이 한 분 있고 두 분이 다 의사인데 이 분의 봉급은 80만원에 인상되는 醫療業務手當인 55만4,000

원을 받아서 직책수당이나 가족 수당이나 근속년수를 뺀 나머지가 135만4,000원입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냐면 전문의의 경우는 55만4,000원에서 60만9,000원을 받으니까 5만5,000원이 올라가고 일반의의 경우 소장인 경우 본봉 80만원에 55만4,000원을 했는데 인상해도 55만4,000원, 지방은 감지가 51만8,000원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해서 일반직 의사인 소장의 경우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5급인 경우에는 의약과장이 의사로서 한 분 있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만약 전문의인 경우 현행은 본봉 70만3,500원인데 수당 나뉘를 받기 때문에 47만1,000원을 받던 것이 60만9,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3만8,000원을 더 받고, 의약과장이 일반의인 경우에는 51만8,000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47만1,000원을 받던 것보다 4만7,000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라고 된 것은 계약에 의해서 3년간씩 병원이나 보건소 X-선과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 분들은 가목이건 나목이건 다 혜택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인 경우 보건소의 전문의 우선 채용은 이 중 내과, X-선과에 우선 채용되는데 현재 전문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만약 있다고 하면 지금 수당으로 45만원 받던 것을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00만원을 받습니다. 매달 55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전문의는 없고 나머지 5명 의사는 전부 나목 의사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인데 30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66만1,000원을 받게 되니까 매월 35만6,000원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재원은 약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우리 鄭 委員님이 질의한 내용은 본봉을 알아야 수당에 대해 質疑할 수 있으니까 본봉이 얼마나냐고 물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萬魯委員 委員席에서 - 일반 병원 의사와 현재 保健所에 근무하는 의사의 급료가 얼마나 되고 수당이 올라가면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保健行政課長 閔載植 지금 4급인 경우 본봉은 소장님은 80만원, 일반 의사와 전문 의는 같습니다. 5급인 경우에는 70만3,000원입니다. 일반 의사, 진료 의사는 가급일 경우에 89만3,000원, 나급인 경우 75만2,000원입니다.

李萬魯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의원은 잘 모르고 市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의 의사 본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봉은 가목 전문의인 경우 97만3,000원이고 나목인 경우 75만1,000원으로 보건소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더 설명드리면 病院에勤務하는 의사 봉급 체계가 우리와 다릅니다. 保健所는 醫療業務手當이 있는데 거기는 技術手當으로 가급은 26만원, 나급은 24만원을 매월 주고 임상연구수당으로 가급은 50만원, 나급은 30만원씩 줬는데 병원 자체가 가급 임상연구수당을 우리 의사에게 주려고 개정하는 그 액수대로 이것을 고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市立病院 醫師들이 市에 條例 改正이 올라가있기 때문에 保健所에勤務하는 분보다 技術手當이 26만원과 24만원을 더 받습니다. 인상이 되어도.

○鄭命浩委員 補充 質疑를 하겠습니다.

본봉과 醫療業務手當 外에는 없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閔載植 본봉에다 의료업무수당과 공무원과 같이 직책수당 40%, 근속수당은 최고 6만원밖에 안 올라갑니다. 우리 공무원은 10년 이상이면 8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다 가족수당은 다 주고 우리 공무원이 다 받는 것 외에 醫療業務手當이 나가는 겁니다.

○鄭命浩委員 잘 알겠습니다. 사실 保健所業務가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인텔리 직급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4년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아주 高級人力인데 일반 병원에勤務하는 분들보다 물론 技術이나 研究하는 次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료업무수당이 본 給與와 包含되었을 때 일반 시중에 있는 醫師들의 給與와 얼마나 差異가 나느냐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또 다른 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지금 保健所에 專門醫가 계십니까?

○保健所長 趙轍行 한 사람이 있는데 마취과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면 이번 醫療業務手當 支給件에 대해서는 醫師가 전부 7분인데 所長님은 變化가 없고 醫藥課長 한 분에게만 13만8,000원 정도가 혜택이 가고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36만5,000원씩 혜택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2,600만원의 豫算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專門委員께서 檢討하실 때 이런 것을 比較해서서 표를 作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600만원이 豫算에는 問題가 없습니까? 總務局長님!

○總務局長 周和種 추경에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千相旭委員 이것이 아까 專門委員이 얘기하기로는 서울시 각 區가 공통적으로 통일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保健所長 趙轍行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동일하게

○千相旭委員 保健所長님께 여쭙보겠는데 保健職이라고 있지요? 보건직에勤務하는 公務員들이 課長이나 保健所長이 될 길이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事實입니까? 그 분들이 말하자면 保健所의 所長이나 각 課長이나 係長의 이런 職責은 자기들이 保健職이니까 그 業務를 遂行하면 能率의으로 할 수 있는데 醫師가 그 職責을 맡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進級할 機會를 잃어버리니까 그것에 대해 地方議會에서 是正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는데 그 內容에 대해서 保健所長님의 意見은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趙轍行 그 진정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千相旭委員 지금 우리 保健所 안에 保健職 公務員 몇 명이나 있습니까?

○保健所長 趙轍行 保健指導課長과 健康管理

係長, 防疫係長이 保健職입니다.

(○李萬魯委員 委員席에서 — 專門醫師가 保健所에 勤務하는 것을 勤務하러 하지 않아요? 專門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豫算은 그대로 認定을 해줘야 됩니다.)

○保健所長 趙轍行 예, 報酬關係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發言權을 드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鄭鍾九 委員 質疑하십시오.

○鄭鍾九委員 鄭鍾九委員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나오셨기에 이것이 물론 質疑 事項이 아닐 수가 있지만 保健所에 關係된 問題이기 때문에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방역제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消毒防疫 建物에 보면 1년에 몇번 消毒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建物……. 수시로 防疫을 안 하고 소독을 안 해도 될 시기인데도 檢査를 나오고 防疫하라는 行政 命令을 내고 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防疫에 대해서 우리 鍾路區 保健所에서는 어떠한 行政을 하고 있나 해서 우선 지금 의무기정을 地方醫務書記官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問題가 되겠습니다. 마는 일단 保健所長님께서 나오셨기에 參考적으로 여쭙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천㎡, 2천㎡, 건물에 대해 방역은 3개월이면 3개월, 매월이면 매월, 1년에 몇번이면 몇번, 어떤 基準에 의해 防疫을 하고 있는지……

○委員長 金成贊 鄭委員님!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제 외 案件이므로 다음에 따로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會議 進行上 隘路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洪承台 委員 質疑하십시오.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專門醫의 4급, 5급이 60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의가 55만4,000원인데 아까 종로구에는 X-선 기사가 전문의인데

이 양반이 X-선 기사는 일반의와 달라서 전문의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市の 각구 保健所에 專門醫는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의가 지금 여러 가지 惠澤이나 俸給 關係가 미흡해서 안 오고 있는데 政府 次元에서 지금 산골짜기는 군 복무를 안 마치고 가정의라든가 이렇게 採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市도 우리 鍾路區 같은 경우는 保健所를 新築해서 하는데 사실 給料를 변경하더라도 專門醫가 와서 內科면 내과를 실제로 진찰할 때 그만큼 區民이 惠澤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을 招聘해서 우리가 참으로 保健所다운, 진료다운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趙轍行 保健所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의 意見으로는 역시 보수관계라고 생각합니다. 報酬關係만 충분히 確保되면 人力 確保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答辯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동대문에 X-선 전문의가 있습니다.

○洪承台委員 서울市內 各 區廳 保健所에 채용된 專門醫는 없습니까? X-선 빼고,

專門醫 醫師는 產婦人科나 內科가 중요한데 專門醫는 現在 雇傭될 수도 없는지……

(○鄭鍾九委員 委員席에서 — 치과는 없습니까?)

○保健所長 趙轍行 치과는 전문의 制度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家庭醫學 專門醫가 몇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全體的으로 대여섯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洪承台委員 군 服務를 끝마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所長 趙轍行 아닙니다. 그것은 公採를 한 것입니다.

시중의 다른 병원 수준이 안 되더라도 保健所도 이점이 있습니다. 保健所 의사들은 夜間勤務를 안 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보수만 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일반 病院과 맞지 않더라도 20~30% 차이가 있다면 夜間勤務를 안 하고 5시면 退勤할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에 綜合病院보다 그런 점이 有利하니까 一般病院의 70%만 되면 많은 인력이 確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成贊 예, 芮相浩 委員! 말씀하십시오.

○芮相浩委員 芮相浩委員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報酬가 약하고 條件이 나빠서 지금 專門醫라든지 一般醫師가 確保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問題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保健所는 무엇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냥 깎데기만 만들어 놓고 여지껏 運營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일로 생각되고 그러면 빨리 迅速한 對策을 세워서 우리 國民保健이라든지 市民保健에 대처를 했어야지 이제까지 그냥 두었다는 것은 問題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번에 급수에 따라서 醫療手當을 인상하는 것은 지금 가져왔는데 이것이 지금 一般職 公務員이라든지 어떤 公務員도 충분한 월급하에 충분한 條件下에 勤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만스럽고 좋지 않은 條件이지만 公務員이라는 뜻에서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俸給이 充分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豫算도 問題지만 引上額이 100%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他公務員에게 끼치는 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問題도 檢討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100%씩 올려주면 타 공무원에게 끼치는 사기를 檢討해 보셨는지 타 公務員들 사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保健所長 趙敏行 지금 100% 올리는 것은 一般公務員이 아니고 契約職이기 때문에 專門職이기 때문에 다른 公務員하고 다르게 取扱하고 있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成贊 예, 洪承台 委員! 말씀하십시오.

○洪承台委員 미안합니다. 자꾸만 제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 俸給 가지고는 이 분들이 技術職이기 때문에 不足한 점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0% 내지 30%만 부족하더라도 專門職 醫師를 招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올리면 專門職 醫師를 招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保健所長 趙敏行 제가 말씀드린 것은 一般 開業醫의 報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洪承台委員 그래도 一般病院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是正하려면 積極的인 면에서 俸給을 좀더 올리더라도 그러한 분을 초빙해서 診療다운 診療를 할 수 있는 根本的인 對策을 강구해야 原則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俸給을 올릴 때 確實하게 올려서 아주 專門醫를 招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保健所長 趙敏行 內務部 規定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成贊 예, 千相旭 委員! 말씀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內容을 나름대로 把握해 보니까 內務部에서 承認을 득해서 全體的으로 一律的으로 引上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데 소장님에게 제가 付託드리고 싶은 것은 芮相浩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醫師 선생님들께서 開業醫하고는 比較가 안 되지만 一般 市立病院하고는 비슷한 水準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區民의 어떠한 醫療를 위해서는 좀더 心機一轉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造成해달라는 것을 質疑는 아니지만 各別히 付託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鍾路區民의 保健所에 대한 印象은 施設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妥結해 본 結果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千相旭 委員님은 建議事項이군요.

또 다른 委員 質疑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李萬魯 委員! 말씀하십시오.

○李萬魯委員 李萬魯입니다. 이것이 같은 給

料와 똑같이 해준다고 해도 事實 保健所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保健所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專門醫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와도 감기약이나 해주지 診療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引上問題는 우리가 더 引上해서라도 保健所다운 保健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引上을 해줘서 保健所가 앞으로 새 建物도 짓고 하니까 동네에 模範的인 保健所가 되도록 付託드립니다.

○保健所長 趙徹行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지금 자꾸 質疑는 안 하시고 衆口難防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質疑는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保健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討論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表決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서울특별시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6時47分)

○委員長 金成贊 議事日程 第2項 서울특별시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總務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周和鍾 總務局長 周和鍾입니다.

鍾路區廳에서 提出한 서울특별시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平素 技術職 公務員의 職級 名稱을 國民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또한 技術職 公務員의 士氣를 振作하고 矜持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技術職 公務員의 職級

名稱이 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원 등으로 規定되어 있는 것을 行政職 公務員의 名稱과 같이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등으로 一元化하는 內容으로 '92年 12月 26日 地方公務員任用令 中 改正令이 公布되었습니다.

改正된 保健所設置條例 內容은 委員들에게 配付해 드린 서울특별시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同條例의 第3條의 [所長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地方公務員任用令 中 改正令에 맞추어서 所長을 地方醫務書記官 또는 地方保健書記官으로 보한다는 內容입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1993. 2. .

제 출 자: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같이 일원화되었으며,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도 임용령 개정 취지와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기술직 직급 명칭이 행정직과 일원화됨에 따른 직급 명칭 개정
- 지방의무기정 → 지방의무서기관
- 지방보건기정 → 지방보건서기관

3. 개정(안): 별 첨

4.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 "지방공무원 임용령중개정령"
- 시정 12230-047('93.01.2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정비 철저"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

서기관”으로 하고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 12.26부터 적용한다.

5.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3조(소장) ①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89.9.5. 조례 90)	제3조(소장) ①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89.9.5. 조례 90)

○委員長 金成贊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司空 坤 專門委員 司空 坤입니다.

1993년 2월 1일 鍾路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 意見을 報告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26일자로 대통령령 第13786號로 地方公務員任用令이 改正되어 技術職公務員의 職級 名稱을 누구나 알기 쉽고 該當 公務員도 矜持를 가질 수 있도록 行政職 公務員의 職級 名稱 體系와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서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 第3條 중 保健所長의 職級 名稱을 지방의무기정에서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또는 지방보건기정을 地方保健書記官으로 改正하는 것은 適法하다고 判斷됩니다.

以上 報告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討論하겠습니다.

討論이 없으면 討論 終結을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 終結을 宣布합니다.

表決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審査報告는 委員長이 幹事와 協議하여 作成해 本會議에 報告하였으며 第23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市民行政委員會의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52分 散會)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司空	坤
---------	----	---

○關係公務員

總 務 局 長	周 和 鍾
保 健 所 長	趙 轍 行
保 健 行 政 課 長	閔 載 植

○出席委員 11名

金 成 贊	羅 在 岩	鄭 命 浩
千 相 旭	玄 壽 漢	李 萬 魯
鄭 鍾 九	洪 承 台	芮 相 浩
朴 勸 先	林 臥 龍	

